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3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1)산림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지	기	교
3000	경제개발비	47,222,747	50,475,300	△3,252,553	[국 △2,944,292 [양 0	도 △308,261 기 0	지 0 교 0	0] 0]	
3300	국토자원보존개발비	47,222,747	50,475,300	△3,252,553	[국 △2,944,292 [양 0	도 △308,261 기 0	지 0 교 0	0] 0]	
3310	산림자원개발	47,222,747	50,475,300	△3,252,553	[국 △2,944,292 [양 0	도 △308,261 기 0	지 0 교 0	0] 0]	
3311	산림관리	39,673,848	43,104,542	△3,430,694	[국 △2,748,457 [양 0	도 △682,237 기 0	지 0 교 0	0] 0]	
200	사업예산	39,593,034	43,023,728	△3,430,694	[국 △2,748,457 [양 0	도 △682,237 기 0	지 0 교 0	0] 0]	
210	보조사업	37,603,640	41,044,334	△3,440,694	[국 △2,748,457 [양 0	도 △692,237 기 0	지 0 교 0	0] 0]	
	308 자치단체등 이전	2,130,436	2,162,034	△31,598					
		2,130,436	2,162,034	△31,598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보호수정비 (국60,000,000원 + 도42,000,000원) - 122,400,000원 = △20,400 (국) △12,000 (도) △8,400			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영림계획작성 (국42,535,000원 + 도21,267,000원) - 75,000,000원 = △11,198 (국) △7,465 (도) △3,733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,423,008	1,900,162	△477,154	
		1,416,191	1,893,345	△477,154	01 시설비 ○조림용 묘목양묘 국1,416,191,000원 - 국1,893,345,000원 = △477,154 (국) △477,154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33,819,183	36,751,125	△2,931,942	
		33,819,183	36,751,125	△2,931,942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사방사업 △240,517 (국) △185,011 (도) △55,506 ·산지사방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1)산림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151,200,000원+도45,360,000원)-65,995,000원 = 130,565
					(국) 100,435
					(도) 30,130
					· 예방사방
					(국56,700,000원+도17,010,000원)-146,838,000원 = △73,128
					(국) △56,252
					(도) △16,876
					· 야계사방
					(국534,800,000원+도160,440,000원)-1,274,809,000원
					= △579,569
					(국) △445,822
					(도) △133,747
					· 사방댐
					(국1,575,000,000원+도472,500,000원)-1,648,695,000원
					= 398,805
					(국) 306,774
					(도) 92,031
					· 해안침식지복구
					(국222,741,000원+도66,823,000원)-434,346,000원
					= △144,782
					(국) △111,371
					(도) △33,411
					· 사방댐준설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63,700,000원+도19,110,000원)-50,960,000원 = 31,850
					(국) 24,500
					(도) 7,350
					· 비료주기
					(국2,809,000원+도843,000원)-7,910,000원 = △4,258
					(국) △3,275
					(도) △983
					○조림사업
					(국2,906,860,000원+도734,587,000원)-5,287,785,000원 = △1,646,338
					(국) △1,291,963
					(도) △354,375
					○육림사업
					(국8,896,188,000원+도2,117,040,000원)-11,254,587,000원 = △241,359
					(국) △180,092
					(도) △61,267
					○표고재배단지조성
					(국205,200,000원+도61,600,000원)-533,500,000원 = △266,700
					(국) △205,200
					(도) △61,500
					○밤 재배지 작업로 시설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87,870,000원+도26,362,000원)-630,240,000원 = △516,008
					(국) △396,930
					(도) △119,078
					○밤 방제장비
					(국32,400,000원+도16,200,000원)-122,400,000원 = △73,800
					(국) △49,200
					(도) △24,600
					○밤재배지 토양개량
					(국91,861,000원+도6,890,000원)-574,045,000원 = △475,294
					(국) △442,134
					(도) △33,160
					○밤나무 노령목관리
					(국38,775,000원+도11,632,000원)-131,345,000원 = △80,938
					(국) △62,260
					(도) △18,678
					○임산물생산단지조성
					(국120,000,000원+도18,000,000원)-241,500,000원
					= △103,500
					(국) △90,000
					(도) △13,500
					○표고재배시설
					(국1,472,850,000원+도441,855,000원)-1,647,945,000원
					= 266,76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205,200 (도) 61,560 ○6월 호우피해복구 (성립전예산) 184,230 (국) 184,230 · 산사태(2.51ha) = 98,263 (국) 98,263 · 임도(1.67km) = 85,967 (국) 85,967 ○7월 호우피해복구 (성립전예산) 261,522 (국) 261,522 · 산사태(3.8ha) = 173,673 (국) 173,673 · 임도(1.4km) = 87,849 (국) 87,849
220	자체사업	1,989,394	1,979,394	10,000	
	308 자치단체등 이전	274,028	264,028	10,000	
		274,028	264,028	10,00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국토공원화(무궁화)사업 평가시상 10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1)산림관리

세세항:(220)자체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· 최우수 5,000,000원x1시군 = 5,000 · 우수 2,500,000원x2시군 = 5,000
3312	산림환경연구	4,222,982	3,977,950	245,032	[국 7 도 245,025 지 0] [양 0 기 0 교 0]
100	경상예산	2,776,227	2,808,510	△32,283	
110	인건비	1,886,762	1,922,455	△35,693	
	101 인건비	1,886,762	1,922,455	△35,693	
		402,086	437,779	△35,693	03 기타직보수 ○ 청원경찰 · 청원산림 363,925,000원 - 330,014,000원 = 33,911 ○ 계약직 38,161,000원 - 107,765,000원 = △69,604
120	경상적경비	889,465	886,055	3,410	
	203 업무추진비	129,980	126,570	3,410	
		124,310	120,900	3,410	04 기타업무추진비 ○ 직급보조비 = 2,910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3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2)산림환경연구

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대민활동비 = 500
200	사업예산	1,446,755	1,169,440	277,315	[국 7도 277,308 지 0] [양 0기 0 교 0]
210	보조사업	1,023,687	1,023,672	15	[국 7도 8 지 0] [양 0기 0 교 0]
	401 시설비및부 대비	990,269	990,254	15	
		980,659	980,644	15	01 시설비 ○육림사업 (1,267,160원x30ha) - 38,000,000원 = 15 (국) 7 (도) 8
220	자체사업	423,068	145,768	277,300	
	206 재료비	91,968	70,968	21,000	○산림환경연구재료 85,968,000원 - 70,968,000원 = 15,000 ○채종림관리재료 = 6,000
	207 연구개발비	43,000	20,000	23,000	
		7,000	0	7,000	01 학술용역비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	
					○열대식물 전시온실 안전진단	7,000,000원x1개소	= 7,000
		16,000	0	16,000	02 전산개발비		
					○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	16,000,000원x1식	= 16,000
	401 시설비및부대비	258,600	27,300	231,300			
		258,600	27,300	231,300	01 시설비		
					○박물관계단 및 조형화단 보수		= 89,000
					○열대식물전시온실 보수		= 72,300
					○연못주변 안전울타리 설치	100,000원x400m	= 40,000
					○박물관 노후 영상장비 교체	5,000,000원x6대	= 30,000
	405 자산취득비	29,500	27,500	2,000			
		29,500	27,500	2,0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		
					○휴대용 인버터 아크용접기	500,000원x1대	= 500
					○가솔린 휴대용발전기	1,500,000원x1대	= 1,500
3313 휴양림관리		3,325,917	3,392,808	△66,891	[국 △195,842 도 128,951 지 0] [양 0 기 0 교 0]	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	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				
200	사업예산	1,836,739	1,903,630	△66,891	[국 [양	△ 195,842 0 기	도 0 기	128,951 0 교	지 교	0] 0]
210	보조사업	1,493,056	1,789,715	△296,659	[국 [양	△ 195,842 0 기	도 0 기	△ 100,817 0 교	지 교	0] 0]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,486,176	1,782,835	△296,659						
		1,462,422	1,752,570	△290,148	01 시설비 ○조림사업					△64,777
							(국)			△33,782
							(도)			△30,995
					· 경제수					
					(1,927,500원x15hax98%) - 32,767,000원			=		△4,432
							(국)			△2,916
							(도)			△1,516
					· 큰나무	(4,113,260원x3hax98%) - 9,163,000원		=		2,930
							(국)			△212
							(도)			3,142
					· 공익조림					
					(12,603,000원x2hax98%) - 87,977,000원			=		△63,275
							(국)			△30,654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△32,621
					○사방사업 △225,259
					(국) △157,681
					(도) △67,578
					· 산지사방 54,000,000원x1hax99% = 53,460
					(국) 37,422
					(도) 16,038
					· 비료주기 668,660원x3ha = 2,006
					(국) 1,404
					(도) 602
					· 해안침식지 복구 = △155,919
					(국) △109,143
					(도) △46,776
					· 야계사방 = △124,806
					(국) △87,364
					(도) △37,442
					○육림사업
					(1,293,036원x470hax98%) - 595,685,000원 = △112
					(국) △56
					(도) △56
		23,754	30,265	△6,511	03 시설부대비
					○조림사업 △1,32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(국)	△689
					(도)	△631
					· 경제수	579,000원 - 668,000원 = △89
					(국)	△60
					(도)	△29
					· 큰나무	247,000원 - 187,000원 = 60
					(국)	△4
					(도)	64
					· 공익조림	504,000원 - 1,795,000원 = △1,291
					(국)	△625
					(도)	△666
					○ 사방사업	△5,189
					(국)	△3,633
					(도)	△1,556
					· 산지사방	540,000원x1ha = 540
					(국)	378
					(도)	162
					· 해안침식지 복구	= △3,182
					(국)	△2,228
					(도)	△954
					· 야계사방	= △2,547
					(국)	△1,783
					(도)	△764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육림사업 12,155,000원 - 12,157,000원 = △2 (국) △1 (도) △1
	220 자체사업	343,683	113,915	229,768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292,389	76,341	216,048	
		292,389	76,341	216,048	01 시설비 ○휴양림관리사무소 청사 및 직원 숙소신축 = 58,700 ○산림전시관 전시물 보수 = 121,628 ○휴양림내 소각로 설치 = 13,720 ○숲속의 집 보수 2,000,000원x11동 = 22,000
	405 자산취득비	19,400	5,680	13,720	
		19,400	5,680	13,72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잔디깎기 구입 880,000원x1대 = 880 ○숲속의 집 비품 등 구입 12,840 · 가스렌지 100,000원x18대 = 1,800 · 정수기 330,000원x18개 = 5,940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3)휴양림관리

세세항:(220)자체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· 옷장 300,000원x8개 = 2,400
					· 신발장 150,000원x18개 = 2,700
세 출 합 계		47,222,747	50,475,300	△3,252,553	